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1.26(화) 10:00

제219회 금천구의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51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 11. 15.
- 라. 회부일자 : 2019. 11. 15.

2. 주요내용

-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에 관한 의견
-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3. 주요내용

- 가. 대 상 : 총 10건

(단위 : 건)

	구 분	계	도 로	완충녹지	공공공지	비 고
	계	10	8	1	1	
해 제 에 관 한 의 견	존치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8	6	1	1	- 존치시설 •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 예산투입 •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 민간시행
	존치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2	2	-	-	- 해제시설 • 해제유보시설 : 난개발 우려등으로 당장 해제 불가능한 시설 • 해제가능시설 : 즉시해제 가능시설
	해제시설 (해제유보시설)	-	-	-	-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2017년)
	해제시설 (해제가능시설)	-	-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4. 참고사항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제도

1)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

2) 보고시기

(가) 매년 구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보고

(나) 보고 후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년마다 재 보고

※ 2013년(최초보고, 도로3건), 2015년(도로5건), 2017년(도로8건, 완충녹지1건, 공공공지1건) 보고

3) 해제권고 절차

(가) (구의회) 구의회에 보고한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권고(도시계획시설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 포함)

(나) (구청장)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결정 또는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명

5. 검토의견

가. 제출 경위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존치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주요 내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총 10건(도로8, 완충녹지1, 공공공지1)으로
도로 8건은 2013년(도로3건), 2015년(도로5건) 보고되어 존치되어
오는 도시계획 시설이며,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는 2006년 최초 결정이후
장기미집행(10년 이상)된 시설으로
- 총 면적은 35,860.9㎡이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1,337억 2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다. 검토의견

금천구의 미집행시설은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되므로(2020. 7. 1)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우선으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7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18. 11. 13.] [대통령령 제29284호, 2018. 11. 13., 일부개정]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3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8.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6916호, 2018. 10. 4., 일부개정]

제68조 (권한의 위임)

-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0.>
-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별표 4**] <개정 2015.1.2.>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사 무 명	관계법령
4의2.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 사업승인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5. 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 6.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 법 제34조, 제48조 영 제29조, 제42조
<u>6의2.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u>	
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매수여부의 결정, 매수결정의 통지 및 매수절차 이행 등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 (구청장이 결정한 시설과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매수의무자인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8. 생략	